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 9. 25.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9.12.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7.9.13.

다. 상정일자 : 제21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17.9.25.)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 가. 제안이유

개관을 앞둔 마포중앙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한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도서관이 구민의 교육·문화·예술 향유의 구심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대표도서관의 지정(안 제5조)
- 2) 조직 및 인력(안 제7조)
- 3) 시설 사용허가(안 제11조)

- 4) 사용료 등(안 제13조)
- 5) 기부·기증·기탁(안 제15조)
- 6)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안 제17조)
- 7)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안 제18조)
- 8) 위탁관리(안 제4장)
- 9) 사용료 등의 부과·감면·환급 기준(별표)
-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 11)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운영 조례」로 변경

### 3. 검토보고 (김건재 전문위원)

○ 조례안의 제안취지는 개관 예정인 마포중앙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립도서관의 관리·운영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구민 교육문화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마포중앙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였으며, 대표도서관 내에 구민의 교육 등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료 등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금액·감면기준·환급규정 등을 별표와 같이 정하되, 별표의 개별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회의,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증·기부의

접수 근거 마련 및 기탁자료의 범위·방법 구체화, 도서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의 선정 및 위탁협약,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음.

○ 조례안 중 수정할 조문을 보면,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운영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안 제2조제1항 중 “(이하 “구”라 한다)”는 “(이하 “마포구”라 한다)”로, 안 제5조의 제목 “(대표도서관의 지정)”은 “(대표도서관의 지정 등)”으로 하며, 안 제8조제1항 중 “구민을 대상으로”는 “도서관은 구민을 대상으로”하고, 안 제15조제3항 중 “구 지역 사료와”는 “마포구 지역 사료와”로, 안 제16조 “구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마포구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로 각각 수정을 요함.

안 제18조제4항 중 “전임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로, 안 제20조제3항 중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중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며, 안 제22조의 제목 “(수탁자의 선정)”은 “(수탁자의 선정 등)”으로, 같은 조 제4항 제2호 중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준용하여 이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각각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